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237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김승수·권영진·유영하

이종배 · 임이자 · 우재준

박충권 · 신동욱 · 박정하

김석기 · 조승환 · 주진우

주호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하천·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 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뿐 그 변경·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금지 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후 5년마다 지정 사유 또는 지 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 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 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재검토 방법, 지정·해제·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3항제2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5년 경과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생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u>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u>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
		역으로 지정한 후 5년마다 지
		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
		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
		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
		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u> <신 설></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
		<u>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u>
		·군수·구청장은 낚시금지구
		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신 설>

② · ③ (생 략)

제82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u>제20조제2항</u>에 따른 제한사 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 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 3. ~ 6. (생략)
- ④ (생 략)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
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어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니
지정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띠
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
한구역의 지정 재검토 방법, 지
정ㆍ해제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⑤</u>· <u>⑥</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 제8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_

- 1. (현행과 같음)
- 2. <u>제20조제5항</u>-----

- 3. ~ 6.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